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18

발의연월일: 2021. 2. 1.

발 의 자 : 윤준병 · 이해식 · 안호영

김수흥・인재근・이용빈

신영대 • 이수진비 • 서영교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문제 해결 및 서비 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일명 '플랫폼 노동자'로 편입되는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등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미흡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 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지원을 공동으로 부담해 배달·운전 등의 용역 제공자들에 대한 공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배달·운전 등의 용역 제공자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31조의2(배달·운전 등의 용역 |
| | 제공자에 대한 특례) ① 국가 |
| |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5조의 |
| |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
| |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 |
| | 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
| | 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 |
| | 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 |
| | <u>·운영하거나 그 휴게시설을</u> |
| |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
|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
| |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 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 |
| | 동으로 부담한다. |
| | 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
| |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
| | 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